[서식3-1]

긴급공고 사유서(국가계약법)

계 약 명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모니터링 체계 점검·개선 지원	
소요예산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부가세 포함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	✓
사 유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모니터링 개선 방향 적시 반영을 위해 연내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긴급 발주	
첨부파일	- (공통) 자체·대행사업 : 상기 법적근거 관련 증빙문서 - 대행사업 : 위탁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긴급공고(문구 포함)' 요청 문서 * 위탁기관 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정부종합대책' 등 명확한 증빙을 추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1의 2번의 경우 국가의 재정정책이 '긴급공고원칙' 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함	

2026년 4월 24일

담당 성명 박 유 은 (서명)

부장 성명 유 남 용 (서명)

부서장 성명 홍 대 웅 (서명)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한 국 환 경 공 단 이사장 (인)

※조달청 발주요청 건 기관장 직인 필수(공단 자체발주 건 제외가능)

2026/04/24 09:34:35 한국환경공단 09. ETS감축제도운영부 박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대한민국 2026. 7.19~29

수 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경유)

제 목 「2026년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체계 점검·개선 지원」용역 긴급발주 승인 알림

1. ETS감축제도운영부-736(2026.4.16.)호 관련입니다.

2.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이행계획서 모니터링 개선 방향 적시 반영을 위해 「2026년 사업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모니터링 체계 점검·개선 지원」용역에 대한 긴급발주를 승인하오니, 사업수행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인

주무관 김소영 행정사무관 강정훈 과장 전결 04/22 김마루

협조자

시행 기후경제과-518 (2026.04.22.) 접수 ETS감축제도운영부-776 (2026. 4. 22.)

우 6194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 mcee.go.kr

전화 044-201-6596 /전송 044-201-6594 / horian83@mcee.go.kr / 비공개(5)